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국무위원 ○○○
(부서명)	(보건복지부장관)
연 월 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 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한 「치매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한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및 제3조의5를 각각 제3조의5 및 제3조의6으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 조의4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에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조기진단
- 2. 상담 및 등록관리
- 3. 치매예방사업
- 4.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5. 경도인지장애 홍보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
	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4에 따른 경도인지
	장애진단자를 위한 서비스에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u>한다.</u>
	<u>1. 조기진단</u>
	2. 상담 및 등록관리
	3. 치매예방사업
	<u>4. 가족 및 보호자 지원</u>
	5. 경도인지장애 홍보
<u>제3조의4</u> ・ <u>제3조의5</u> (생 략)	<u>제3조의5</u> ・ <u>제3조의6</u> (현행 제3조
	의4 및 제3조의5와 같음)